

2023 휘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총론 신규대조표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																									
	학생생활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1	<p>제8조 (현행화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담당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협 의 회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담 당 업 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인성교육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생선도협의회</td> <td>포상, 상벌(징계), 분쟁 조정, 학생회 지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지, 급식 협의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지, 급식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복 공동구매 협의회</td> <td>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교육 협의회</td> <td>성폭력 예방, 양성 평등 교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담당부서	협 의 회	담 당 업 무	인성교육부	학생선도협의회	포상, 상벌(징계), 분쟁 조정, 학생회 지도	복지, 급식 협의회	복지, 급식	교복 공동구매 협의회	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	성교육 협의회	성폭력 예방, 양성 평등 교육	<p>제8조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담당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협 의 회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담 당 업 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인성교육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생선도협의회</td> <td>포상, 상벌(징계), 분쟁 조정, 학생회 지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지, 급식 협의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복지, 급식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교육 협의회</td> <td>성폭력 예방, 양성 평등 교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학년 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교복 공동구매 협의회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담당부서	협 의 회	담 당 업 무	인성교육부	학생선도협의회	포상, 상벌(징계), 분쟁 조정, 학생회 지도	복지, 급식 협의회	복지, 급식	성교육 협의회	성폭력 예방, 양성 평등 교육	1학년 부	<u>교복 공동구매 협의회</u>	<u>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</u>
담당부서	협 의 회	담 당 업 무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성교육부	학생선도협의회	포상, 상벌(징계), 분쟁 조정, 학생회 지도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지, 급식 협의회	복지, 급식																									
	교복 공동구매 협의회	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교육 협의회	성폭력 예방, 양성 평등 교육																									
담당부서	협 의 회	담 당 업 무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성교육부	학생선도협의회	포상, 상벌(징계), 분쟁 조정, 학생회 지도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지, 급식 협의회	복지, 급식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교육 협의회	성폭력 예방, 양성 평등 교육																									
1학년 부	<u>교복 공동구매 협의회</u>	<u>교복 디자인 및 업체 선정</u>																									
2	<p>제10조(학생선도협의회의 구성) (현행화)</p> <p>② 학생선도협의회는 교감, 각부 부장, 인성교육부 기획, 상별담당교사로 구성하며,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.</p> <p>⑤ 학생선도소협의회는 인성교육부장을 주무로 하여, 인성교육부 기획, 상별담당교사로 구성한다. 단,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학생선도협의회의 구성)</p> <p>② 학생선도협의회는 <u>교감, 인성교육부장, 각 학년 부장, 각 학년 사안담당교사</u>로 구성하며,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.</p> <p>⑤ 학생선도소협의회는 <u>인성교육부장을 주무로 하여 교감, 인성교육부기획, 상별점담당교사</u>로 구성한다. 단,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3	<p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 (신설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40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오토바이 폭주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/tr> </table>	40	오토바이 폭주	10	<p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40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오토바이 폭주, <u>무면허 전동킥보드사용,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 미착용,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</u>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/tr> </table>	40	오토바이 폭주, <u>무면허 전동킥보드사용,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 미착용,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</u>	10																			
40	오토바이 폭주	10																									
40	오토바이 폭주, <u>무면허 전동킥보드사용,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 미착용, 2인 이상 전동킥보드 탑승</u>	10																									
4	<p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 (현행화)</p> <p>③ 2. 학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·벌점 담당자가 상·벌점 누계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</p> <p>③ 2. 학생 요구가 있을 때에는 <u>담임교사 또는 상·벌점 담당자</u>가 상·벌점 누계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5	<p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 (수정)</p> <p>⑦ 상·벌점은 학년 단위로 유효하며, 이월 시에 상·벌점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월한다.</p>	<p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</p> <p>⑦ <u>모든 학생의 상벌점은 해당 학년도 학년말 기준(2월 말일)으로 말소한다.</u> 단, 누적 벌점 15점 이상을 보유한 자의 지도는 제12조19항에 따른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6	(신설)	<p><u>제12조(상·벌점제 운영)</u></p> <p>⑧ (누적 벌점 산정일) 다음 각 호를 <u>기준일로 하여 제12조제1항의 벌점 누적 합계로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.</u> 다만,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<u>1. 1차 누적 벌점 산정일은 1학기 중간고사 시작일로 한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
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- 2. 2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1학기 기말고사 시작일로 한다.
- 3. 3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2학기 중간고사 시작일로 한다.
- 4. 4차 누적 별점 산정일은 2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작일로 한다.
- ⑨ 해당 학년도 11월 이후에는 수시로 제12조제1항의 별점 누적 합계 점수로 지도 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.
- ⑩ 별점 누적 합계 점수에 따른 지도 대상학생의 지도단계와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.

단계	별점 누적 합계	지도사항	비고
1	별점 누계 14점 이하	담임교사 또는 인성교육부장 상담	학부모 상담 권장(징계 예 방지)
2	별점 누계 15점 이상 29점 이하	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	
3	별점 누계 30점 이상 39점 이하	학생선도협의회 심의	학교장 통고 심의
4	별점 누계 40점 이상 49점 이하	학생선도협의회 심의	학교장 통고 심의
5	별점 누계 50점 이상 59점 이하	학생선도협의회 심의	학교장 통고 심의
6	별점 누계 60점 이상	학생선도협의회 심의	학교장 통고 심의

- ⑪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에 의해 '학교 내의 봉사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15점 이상 29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- ⑫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심의에 의해 '학교 내의 봉사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3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.
- ⑬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'사회 봉사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30점 이상 39점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- ⑭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'사회 봉사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이 된다.</p> <p>⑮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'특별 교육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40점 이상 49점 이하 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⑯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'특별 교육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.</p> <p>⑰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'출석 정지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50점 이상 59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⑱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'출석 정지'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이행하여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별점이 경감된 후 누적된 별점이 다음 누적 별점 산정일 기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 대상이 된다.</p> <p>⑲ 동일학년도 내에서 학생선도소협의회 또는 학생선도협의회 심의에 의해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이 4차 누적 별점 산정일을 기준으로 15점 이상의 누적 별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2조10항에 따라 지도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제15조(시상 및 추천) (일부삭제) 3. (시상 및 추천대상제외) 느티나무 교육 및 징계를 받은 자는 학교에서 수여하는 모범상과 대외 모범 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	제15조(시상 및 추천) 3. (시상 및 추천대상제외) 징계를 받은 자는 학교에서 수여하는 모범상과 대외 모범 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제18조(징계의 심의) (현행화) ③ 학생선도(소)협의회는 학생들의 상·별점 내역을 검토 및 반영하여 학생징계에 과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	제18조(징계의 심의) ③ 학생선도(소)협의회는 학생들의 별점 내역을 검토 및 반영하여 학생징계에 과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상별점표의 '특별 사안 항목' 삭제 '징계 사항'으로 신설	<p>④ 징계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53 1686 1476 2056"> <thead> <tr> <th>항</th> <th>내 용</th> <th>학 교 내 봉 사</th> <th>사 회 봉 사</th> <th>특 별 교 육</th> <th>출 석 정 지</th> <th>퇴 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 적 별점이 15점 이상 29점 이하인 학생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 적 별점이 30점 이상 39점 이하인 학생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	내 용	학 교 내 봉 사	사 회 봉 사	특 별 교 육	출 석 정 지	퇴 학	1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 적 별점이 15점 이상 29점 이하인 학생	○					2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 적 별점이 30점 이상 39점 이하인 학생		○				3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			○		
항	내 용	학 교 내 봉 사	사 회 봉 사	특 별 교 육	출 석 정 지	퇴 학																								
1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 적 별점이 15점 이상 29점 이하인 학생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 적 별점이 30점 이상 39점 이하인 학생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	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				
		적 벌점이 40점 이상 49점 이하인 학생				
4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벌점이 50점 이상 59점 이하인 학생				○	
5	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누적 벌점이 60점 이상인 학생					○
6	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(반항, 욕설, 불순한 태도, 도주 등)		○	○	○	○
7	교권을 침해한 학생		○	○	○	○
8	불법집회, 불량 동아리 조직 및 운영한 학생		○	○	○	○
9	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동조한 학생		○	○	○	○
10	타인의 명예훼손, 스토킹한 학생		○	○	○	○
11	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		○	○	○	○
12	공공기물,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		○	○	○	○
13	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		○	○	○	○
14	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동조한 학생		○	○	○	○
15	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		○	○	○	○
16	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		○	○	○	○
17	무단가출로 미인정 결석 중 물의를 일으킨 학생		○	○	○	○
18	도박(인터넷 도박 포함) 및 사행성 행동을 한 학생		○	○	○	○
19	불건전한 행위로 학교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		○	○	○	○
20	교내 음란행위, 음란물 소지로 미풍양속을 해한 학생		○	○	○	○
21	휴기를 휴대한 학생		○	○	○	○
22	학교의 공공기물, 집기류 및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		○	○	○	○
23	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유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			○	○	○
24	환각제(분드, 가스, 마약)를 사용하거나 동조한 학생			○	○	○
25	징계(선도) 지도에 불응한 학생			○	○	○
26	징계 중 위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			○	○	○
27	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학생				○	○
28	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				○	○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															
10	<p>제19조(징계의 종류와 기간) (수정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,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 내의 봉사 : 일반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2. 사회봉사 : 특별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일~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3. 특별교육이수 : 특별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, 그 기간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. 단, 이수증이 없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. 4. 출석정지 : 특별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5. 퇴학처분 : 학생선도협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퇴학을 명한다. 6. (삭제) 징계 전 예방교육으로 '느티나무교육'을 실시할 수 있고, 그 기간은 최대 1일에서 3일의 범위 안에서 학생선도협회가 정한다. 	<p>제19조(징계의 종류와 기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,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 내의 봉사 : 벌점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학생선도소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2. 사회봉사 : 벌점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거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일~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<u>2호 각주 추가) 사회봉사는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</u> 3. 특별교육이수 : 벌점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거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, 그 기간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. 단, 이수증이 없을 때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 4. 출석정지 : 벌점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되거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선도협회의 심의·의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5. 퇴학처분 : 학생선도협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퇴학을 명한다. 6. (삭제) 															
11	제25조(사후 조치) (현행화) ③ 1. '학교 내의 봉사' 이수자 : 10~20점	제25조(사후 조치) ③ 1. '학교 내의 봉사' 이수자 : 15점															
12	(신설)	<p><u>제31조(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)</u> ③ <u>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.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58 1637 1476 2065"> <thead> <tr> <th>생활지도</th> <th>요건</th> <th>분리장소(시간)</th> <th>절차 및 유의점</th> <th>학습지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</td> <td>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*교육 활동 방해 행위: 수업 중 돌아다니기, 장난, 장담, 소음 등</td> <td>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</td> <td>주의를 준 후 실시</td> <td>학생 본인 준비</td> </tr> <tr> <td>2호 지도</td> <td>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</td> <td>교실 내 지정된</td> <td>주의를 준 후 실시</td> <td>학생 본인 준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	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	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*교육 활동 방해 행위: 수업 중 돌아다니기, 장난, 장담, 소음 등	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	학생 본인 준비	2호 지도	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	교실 내 지정된	주의를 준 후 실시	학생 본인 준비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													
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	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*교육 활동 방해 행위: 수업 중 돌아다니기, 장난, 장담, 소음 등	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	학생 본인 준비													
2호 지도	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	교실 내 지정된	주의를 준 후 실시	학생 본인 준비													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				
		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해할 경우	위치 사 물 함 앞, 교실 뒤편 (수업 시간 내 일부)	(단,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)	
		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 지도·감독 할 수 있는 개 방된 교 실 앞 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.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 자를 준비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	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남관 1층 상담실	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, 해당 학생 담임(부) 재시 해당 학생 사안담당, 학년부장, 인성부장, 교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	가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내 20분 내 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	나 ① 3호 '나'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남관 1층 상담실	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
13	제36조(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) (추가) ① 학생 개인 및 학교,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② (현행화) 제25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를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. ③ (신설)	제36조(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) ① 학생 개인 및 학교,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 <u>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 단,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.</u> 다만,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② 제36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를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.				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																
		<p>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·기간·장소·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74 371 1469 1160"> <thead> <tr> <th>요건</th> <th>분리 기간</th> <th>분리 장소</th> <th>분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36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</td> <td>수업 시간</td> <td>교실 지정 장소</td> <td>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</td> </tr> <tr> <td>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</td> <td rowspan="3">3일</td> <td rowspan="3">남관 1층 상담 실</td> <td>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</td> </tr> <tr> <td>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</td> <td>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</td> </tr> <tr> <td>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환의 대상은 보호자로 한다. ※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. 단, SMS(문자메세지),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. ※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휴계할 수 있다. (예시 :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, 성찰하는 글쓰기,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위상복구(청소 포함))</p>	요건	분리 기간	분리 장소	분리방법	제36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 시간	교실 지정 장소	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3일	남관 1층 상담 실	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	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	
요건	분리 기간	분리 장소	분리방법															
제36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 시간	교실 지정 장소	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															
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3일	남관 1층 상담 실	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															
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			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															
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																		
14	<p>제41조(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)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·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, 압수의 요건과 기간, 반환 방법을 정할 수 있다. (신설)</p>	<p>제41조(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)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·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, 압수의 요건과 기간, 반환 방법을 정할 수 있다. 1.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휴계할 수 있다. 2. 휴대전화의 분리 요건·기간·장소·방법 등은 제 36조3항의 표에 따른다.</p>																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
15	<p>부 칙(현행화) 제1조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과거 개정안 시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 3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4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/div>	<p>부 칙 제1조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과거 개정안 시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 3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4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5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</div>
학생자치활동 규정		
1	<p>제25조(자격상실) (현행화)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, 6~9호)가 확정되었을 때 	<p>제25조(자격상실)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~9호)가 확정되었을 때
2	<p>제29조(자격상실) (현행화)① 정·부회장 및 각부 부·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 ⇨ 제57조 (보궐선거) 참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, 6~9호)가 확정되었을 때 	<p>제29조(자격상실) ① 정·부회장 및 각부 부·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 ⇨ 제57조 (보궐선거) 참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~9호)가 확정되었을 때
3	<p>제40조(자격상실) (현행화)① 학급회장,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, 6~9호)가 확정되었을 때 	<p>제40조(자격상실) ① 학급회장,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~9호)가 확정되었을 때
4	<p>제46조(자격상실) (현행화)① 학생자치법정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, 6~9호)가 확정되었을 때 	<p>제46조(자격상실) ① 학생자치법정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(4~9호)가 확정되었을 때
5	<p>제61조(입후보 자격) (삭제)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, 세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봉사 정신과 통솔력이 있는 자 2.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% 이상인 자 3.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대상자가 아니거나, 징계가 확정되고 1년이 지난 자 4. 학생회장, 부회장 후보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및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	<p>제61조(입후보 자격)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, 세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봉사 정신과 통솔력이 있는 자 2. 학생회장, 부회장 후보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및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6	<p>부 칙(현행화) 제1조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 제1조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연번	2023.12.31.까지	2024.1.1.부터
	<p>※ 과거 개정안 시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 3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4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	<p>※ 과거 개정안 시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 3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4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5. 본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하여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끝.